
2015년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
성 과 분 석 보 고 서



행 정 관 리 국
(자 치 행 정 과)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 기금운용 개요

1. 연 혁

- 설치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42조
 -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
- 기금운용 목적
 -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
 -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

2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14년 운용현황		2014년말 조성액	2015년 운용계획			비 고
수 입	지 출		수 입	지 출	증 감	
488	70	760	440	300	140	

II 분석 결과

1. 총 평

-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개선자금 및 재해구호비 · 긴급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음.

- 기금재원은 융자회수금, 회수이자,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51명에게 902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음.
-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달성도가 2012년 97%, 2013년 83%, 2014년 16%로 매년 융자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음
- 융자대상이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가구로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기금 이용도가 낮음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2013년도			2014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440	366	83	440	70	16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구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2013년	○ 융자지원 사업 - 22명 440백만원	○ 융자지원 사업 - 21명 366백만원	83%
2014년	○ 융자지원 사업 - 22명 440백만원	○ 융자지원 사업 - 4명 70백만원	16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내용	비고
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	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	- 영세자영업자의 가게운영자금,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운영지원 -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또는 긴급의료비 등 용자지원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2012년	2013년	2014년	비고
97%	83%	16%	2012년 이후 감소

○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구분	지적내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2012년	해당없음
	2013년	해당없음
	2014년	해당없음
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	해당없음	
기타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: 해당없음

○ 기금 유지가 불가피한 사유

사업명	2014년 사업비	이유	불가피성 정도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사업	70백만원	- 용자회수금, 회수이자,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등으로 매년 일정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신축적 용자 지원이 가능함	중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구 분	사 업 명	금 액	비 고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해당없음	-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해당없음	-	
타 기 금	해당없음	-	

○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○ 재원의 성격 및 규모 : 용자회수금 및 회수이자,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용자를 재 지원하며, 2015. 6. 30기준 기금의 규모는 1,702백만원임

○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12		2013		2014		비고
수 입	합 계	731	%	708	%	830	%	
	출 연 금							
	보 조 금							
	차 입 금							
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394	54	435	62	476	58	
	예탁금상환금							
	예치금회수	328	45	265	37	342	41	
	예 수 금							
	이 자 수 입	9	1	8	1	12	1	
기 타 수 입								
지 출	합 계	731	%	708	%	830	%	
	고유목적사업비							
	용 자 금	466	64	366	52	70	8.4	
	인 건 비							
	물 건 비							
	예 탁 금							
	예 치 금	265	36	342	48	760	91.6	
	차입금원리금상환							
	예수금원리금상환							
기 타 지 출								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향후 조치계획
 - 기금 용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없을 시 신용보증서 제출 등을 적극 안내하여 가용자금 최대 용자지원
 - 기금 용자지원 홍보방안으로 구, 동주민센터 LED전광판, 구 홈페이지 등 보도매체 적극적인 활용
- 건의사항 : 해당없음